

- (법 §10의3②) 배우자·직계존비속 간 거래가 법 제7조제11항 단서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유상거래시 부당행위 계산 관련 규정 적용을 배제

## □ 적용요령

-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

【지방세법 부칙 제1조(시행일)】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【지방세법 부칙 제3조(부동산등 취득의 증여의제 등에 관한 적용례)】 제7조 제11항 및 제1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# 【(참고) 유상거래 매도·매수자간 관계에 따른 세율 및 과표 적용 비교 ← 개정안 반영 효과】

